

- 6·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 -

청원처리 추진상황 보고서

행정복지본부

자치운영팀

청원처리 추진상황 보고서

청원건	6·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
청원인	제천시 동현동 79-2 김훈식(6·25참전유공자회)
이송년월일	2007. 9.11.
<p>제안요지</p> <p>○ 6·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토록하는 조례를 제정 요청</p>	
<p>처리결과</p> <p>제천시의 발전과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리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『6·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』 건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○ 6·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관련 법령 검토 결과 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” 및 “동법 시행령” 등을 근거로 지원조례 제정에 법률적 제한은 없으며,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타시군(15개 시군)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『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』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.</p> <p>○ 이에 따라 금월중으로 지원조례(안)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토록 하겠습니다.</p>	

- 다만, 당초 6·25참전유공자회의 청원내용에서는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,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여론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. 6·25와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, 무공수훈자회원 등 국가 유공자로서 이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.
- 또한,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1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책정하는 안과,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으로 하고,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안 중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안을 선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※ 참고사항

<지원대상>

- 6.25참전 및 월남참전: 총 1,635명
- 65세 이하(454명) 및 2중 지원(190명) 제외시: **총 991명**

< 1안> 약 133,920천원

- 명예수당: 지원인원 991명 × 10천원 × 12월 = 118,920천원
- 사망위로금: 지원인원 991명 × 약10% × 150천원=15,000천원

<2안> 약 237,840천원

- 명예수당: 지원인원 991명 × 20천원 × 12월 = 237,840천원

※ 지원시기: 2008. 1월부터 실시 예정

- 미비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『참전용사 지원조례(안)』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『6·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』 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.